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) 입소 정원

- 빌리지포유 충주요양원의 입소정원은 49인으로 한다.

2) 입소대상자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

⇒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써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 판정자

⇒ 3.4.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로써 [시설급여] 이용가능 자

-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,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

3) 모집방법

-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.

2.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

1) 계약 기간

- 입소의뢰나 신청 시 기관과 수급자 간의 협의하에 입소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한다. (단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.)

2) 계약 목적

-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)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(2022년)

- 입소보증금: 없음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(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,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.)
-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.

(단위:원)

구분	급여비용		본인부담금			유형별합계금액 (30일기준) [간식비 제외한 금액]		
	1일	30일	일반 (20%)	감경 (12%)	감경 (8%)	20% (다인실) +식재료비	12% (다인실) +식재료비	8% (다인실) +식재료비
1등급	74,850	2,245,500	449,100	269,460	179,640	719,100	539,460	449,640
2등급	69,450	2,083,500	416,700	250,020	166,680	686,700	520,020	436,680
3-5등급	64,040	1,921,200	384,240	230,544	153,696	654,240	500,544	423,696

* 병원비, 약제비는 별도로 청구됨.
* 요양급여, 급간식비는 인상될 수 있음.
*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미발생(단, 입소 후 생계비는 기관으로 입금됨)

3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-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
-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
-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입소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보호자 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보 교류 및 입소자를 위한 개선사항, 고충을 논의할 권리

2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-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
-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- 장기 출장 및 여행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, 통보할 의무
- 입소자의 병원 진료 동행의 의무
- 입소자의 입원에 따른 복용약 제공, 간호.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책임의 의무
- 기타 요양원 생활 규칙 이행

4. 계약의 해제

- 입소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.
-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,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⑤ 배회성,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⑥ 10일 이상의 입원을 하게 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
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⑧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⑨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
- 기관은 입소자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
5. 입소 시 준비 서류

1)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2) 신분증(입소자, 보호자), 가족관계증명서(입소자)
3) 건강진단서(요양원입소용_결핵, B형간염, 에이즈, 피부질환 등 전염성질환 확인서)
4) 의사소견서, 현재복용중인 약 처방전
5) 코로나 음성확인 결과서 및 백신 접종증명서
6)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: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와 시설로 거주지 이전 필요